

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중개형)설명서」 신규조문 대비표

구분	현행	개정(안)	비고
■계좌개요 (중도인출)	☐ 인출일 현재 일반과세 된다고 가정 시 예상되는 제세금은 인출가능금액에서 제외됩니다.	☐ 중도인출 시 인출가능금액에서 해지 시 납부예상 세액만큼 인출 제어됩니다.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는 일반과세 세율로 적용되며, 3년 초과 시에는 비과세한도 적용 후 분리과세 세율로 적용됩니다.	설명서 문구에 대한 보완
■과세특례 (손익통산)	(신설)	☐ 비과세 한도 적용 시 이자소득, 배당소득 순으로 적용 하며,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 (분리과세 소득세액 만큼을 한도로 공제 가능. [2025.07.01 부터 시행]) ☐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4% 로 적용됩니다.	소득세법시행령 제 189 조의 2③ 2025.7.1 시행에 따른 변경